美軍政下의 歸屬農地分配에 관한 硏究

朱　　奉　　圭*

<目　次>

I. 問題의 提起
II. 歸屬農地分配의 背景
III. 歸屬農地分配의 過程과 內容
IV. 結　論

I. 問題의 提起

日本의 敗亡이 決定的으로 發表된 8月 15日 以後 美軍의 南韓進駐는 9月 8日이었고 北韓에는 이미 蘇聯軍이 進駐하고 있었다. 美軍은 進駐와 더불어 많은 法令을 公布하여 當時 國民의 生活狀態에 對한 一步一步의 改善策을 講究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1945年 12月 19日 美軍政은 美軍政法令 第33號로서 日本人 財産權取得에 관한 件을 公布하여 日本人 즉 自然人 및 法人이 所有하였던 財産인 土地를 1945年 9月 25日附로 朝鮮軍政廳이 所有管理케 한다는 것을 公布하였으며, 곧 이어 이 財産을 1946年 2月 21日 法令 第52號에 의하여 設立된 新韓公社에 歸屬시켜서 이 土地를 歸屬農地로 規定하였다.

이와 같은 歸屬農地의 規定下에 美軍政은 이것을 分配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美軍政下에 歸屬農地分配가 갖는 歷史的 意義 및 性格에 관한 究明이 아직 體系的으로 이룩되고 있지 못한 現實에서 本稿는 美軍政下에서의 歸屬農地分配에 관한 歷史的인 性格을 究明 定立하여 이 分野의 學究的 發展에 기여하고자 함에 目的을 둔다.

II. 歸屬農地分配의 背景

解放에 따른 美軍政下의 南韓에서의 農地所有關係를 살펴 보면 總耕地面積의 63.4%가 小作地로서 極少數의 地主에 獨占되어 있었던 狀況에 있었다. 한편 直接的 生産者인 多數

* 本硏究所 硏究員, 서울大學校 農經濟學科 敎授.

〈表 1〉 南韓의 土地所有狀況 總括表(1945年末) 單位：萬町步

區 分	畓	田	計
1. 總耕地面積	128(100.0)	104(100.0)	232(100.0)
2. 小作地面積	89 (70.0)	58 (56.0)	147 (63.4)
(1) 前日本人所有	18 (14.5)	5 (5.0)	23 (9.9)
(2) 朝鮮人地主所有	71 (55.5)	53 (51.0)	124 (53.5)
(3) 5町步以上 所有地主(5萬戶)	43 (33.6)	14 (13.5)	57 (24.6)
(4) 5町步以下 所有地主(15萬戶)	28 (21.9)	39 (37.5)	67 (28.9)
3. 自作地	39 (30.0)	46 (44.0)	85 (36.6)

資料：朝鮮銀行 調査部, 『朝鮮經濟年鑑』, 1948.

農民의 所有地 즉 自作地는 36.6%에 不過한 狀態에 있었다(〈表 1〉 參照).

極少數의 地主에 獨占되고 있었던 63.4%의 小作地所有分布를 前日本人所有와 朝鮮人所有의 地主別 對比에서 보면 前者의 9.9%, 그리고 後者의 53.5%로 構成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解放의 美軍政當時에 있어서 總耕地의 10%에 該當되는 前日本人所有地에 대한 耕作農民의 無償分配要求(1)가 스스로 提起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解放當時 朝鮮人農家의 農地所有關係를 살펴 보면 1町步 未滿의 土地를 所有하는 農家가 全體 朝鮮農家의 80%水準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은 絕對多數 朝鮮農民이 處한 零細經營의 甚刻性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側面에서 注目의 對象이 되었거니와, 零細農業經營의 停滯와 沒落은 바로 解放直後 美軍政下에서의 土地改革問題를 둘러 싼 地主階級의 支配를 維持코자 하는 勢力과 土地改革의 實現을 貫徹코자 하는 勢力과의 葛藤關係를 낳게 한 契機(2)가 되고 있었다.

그 밖에도 日帝支配의 遺産으로서의 植民地的·半封建的 土地所有 및 零細農經營體制는 解放直後 韓國經濟의 支配的 經濟로서 한국 농업의 內的인 基盤을 이루는 基本的인 問題가 되어 있었으므로 舊植民地的·半封建的 土地所有의 淸算이야말로 全民族的·全農民的인 要求對象(3)이 되는 狀況에 놓여 있었다.

또한 1945年 12日 南朝鮮全國農民總聯盟(全農)이 結成大會에서 土地改革을 要求(4)한 以後 歸屬農地分配를 中心으로 한 土地改革의 早期實施는 벌써 不可避한 것으로 一般的으로 認識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美軍政은 1946年 2月에 이르러 舊日本人農地 즉 歸屬農地處分을 主軸으로 한 土地改革案에 우선 着手하기에 이르렀고 1946年 10年에 組織되어진 南朝鮮

(1) 佐々木隆爾, 「第二次大戰後の南朝鮮解放闘爭における土地改革の要求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 1968. 9, p. 165.
(2) 三好四郎, 『半封建土地所有論』, 刀江書院, 1956, pp. 20～21.
(3) 佐々木隆爾, 앞의 論文, p. 166.
(4) 谷浦孝雄, 『韓國の農業と土地制度』,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66, pp. 67～68.

立法議院[5]側과의 審議始動속에서 美軍政下 歸屬農地分配는 一旦 施行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III. 歸屬農地分配의 過程과 內容

美軍政은 1945年 9月 25日字 軍政法令 敵産에 關한 件 및 同年 12月 6日字 軍政法令 日本人財産取得에 關한 件의 發動에 의하여[6] 日本人所有의 農地를 비롯하여 企業, 住宅, 金融機關 등 一切의 財産을 政府管理下에 두는 措置를 講究케 되었다.

敵産處理管理 가운데 農地의 경우는 그후 1946年 2月 21日 軍政法令에 의해서 新韓公社[7]를 設置하여 農地全體를 一括 管理統制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新韓公社에서는 東洋拓殖株式會社가 不二農場 및 朝鮮興業 등의 法人農場의 農地 및 施設外에 個人所有의 土地 및 附屬施設 등을 包含한 모든 것을 管理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나, 農地의 大部分이 小作地化되어 있었기 때문에 繼續하여 地主的 所有로서 그것을 管理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新韓公社의 設立措置에 따라서 新韓公社는 果樹園, 桑田 및 山林을 除外한 28萬餘町步의 土地와 55萬 4,600餘戶의 小作農家를 支配하는 大會社[8]로 君臨케 되었다. 그리하여 新韓公社의 土地를 小作하는 農家의 比率만도 全體 南韓總農家의 27%에 達하고 있었으며 小作地의 경우도 總耕地面積의 13%의 比率에 該當되고 있었다(〈表 2〉 參照).

더우기 新韓公社가 管理統制하고 있었던 農耕地 28萬町步와 小作農家 55萬戶의 地域別分布를 살펴 보면 全南, 全北 및 忠南의 西韓畓作地帶에 集中되어 있었다는 事實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西韓畓作地帶인 이들 地域은 氣候가 溫暖하고 土質條件이 良好

〈表 2〉 新韓公社의 農地와 小作農家關係

農家戶數		耕地面積	
(가) 南朝鮮	2,065,477(戶)	(가) 南朝鮮	2,102,162(町)
(나) 新韓公社	554,067(戶)	(나) 新韓公社	282,480(町)
(나/가)(%)	27(%)	(나/가)(%)	13.4(%)

資料：大韓金融組合聯合會, 『韓國農業年鑑』, 1955.

(5) 過渡立法議院은 1946年 8月 24日 軍政法令 第118號에 의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創設公布에 따라서 設立된 것으로 同創設令에 따라 立法議院의 議員數는 90名으로 하되 그 가운데 45名은 各道單位에서 選擧토록 하며 나머지 45名은 美軍政長官이 任命하게 되었다.
(6) 朱奉圭, 『韓國農業經濟史硏究』, 先進文化社, 1983, p. 321.
(7) 櫻井浩, 『韓國農地改革の再檢討』, アジア經濟硏究所, 1976, p. 66
(8) 朱奉圭, 앞의 책, 1983, p. 324.

〈表 3〉 新韓公社 一般農地의 地域別 分布　　單位：町步

農地別 / 道別	一般農地				
	畓地	田地	垈地	其他	計
京畿道	23,634	9,058	650	1,706	35,648
江原道	819	1,055	88	16	1,978
忠北道	4,927	3,971	427	415	9,740
忠南道	24,035	7,053	770	1,796	33,654
慶北道	13,499	6,503	375	463	20,840
慶南道	26,084	7,327	452	2,801	36,664
全北道	57,905	8,496	478	1,392	68,271
全南道	55,068	17,663	102	1,906	74,739
濟州道	17	905	1	23	946
計	205,988	62,631	3,343	10,518	282,480

資料：農林新聞社編，『農業經濟年報』，1949.

〈表 4〉 新韓公社의 小作農의 地域別 分布

道別	全體農家數(戶)	%	新韓公社小作農(名)	%
京畿道	280,349	100	45,009	16.1
江原道	121,897	100	5,147	4.2
忠北道	135,224	100	25,040	18.5
忠南道	231,303	100	72,271	31.3
慶北道	342,718	100	49,959	14.6
慶南道	292,734	100	80,271	27.4
全北道	341,478	100	104,070	30.5
全南道	412,774	100	172,300	41.8
計	2,065,477	100	554,067	26.8

資料：農林新聞社編，『農業經濟年報』，1949.

하여 南韓에서의 唯一無二의 穀倉地帶라는 地域的인 特色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表 3〉 및 〈表 4〉 參照).

이렇듯 新韓公社는 南韓에서의 最大地主의 立場에 있었고 동시에 南韓에서의 唯一無二의 穀倉地帶를 支配하고 있었던 地主였다. 그리고 新韓公社가 統制管理하는 農地의 大部分이 小作地化되어 있었기 때문에 地主的 所有權者의 立場에 있는 新韓公社가 直接 徵收한 小作料收入 總額만도 8·15以後 年平均 13.4億圓에 達하였다.(9) 1947年 4月 1日부터 1948年 3月 31日까지의 1年間의 收支決算을 살펴볼 때 다음의 (〈表 5〉)에서와 같이 土地의 修理費, 生產費, 俸給 및 賃金 등이 主要한 支出品目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모든 것을

(9) 印貞植, 『朝鮮農業經濟論』, 博文出版社, 1949, p. 59.

〈表 5〉 新韓公社決算書(1947. 4. 1~1948. 3. 31) 單位 : 圓

收入	金額
生産收入	1,412,665,520
特殊事業收入	57,947,589
利子	1,357,868
雜收入	39,810,929
總計	1,511,781,907
支出	**金額**
生産費	176,802,511
俸給	92,701,215
賃金	9,090,776
旅費	62,785,954
修理費	325,114,008
物品費	88,048,994
支拂料金	39,277,385
支拂利子	4,747,342
諸稅	129,741,274
資産差損	1,207,994
消却費	1,727,146
總計	924,044,504
純益金	587,737,402

資料 : 農林新聞社編, 『農業經濟年報』, 1949.

支拂하고 나서도 5億 8,700萬餘圓의 莫大한 收益을 올리고 있다는 事實에서 南韓에서의 最大地主의 性格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美軍政은 過渡的인 段階下에서 舊日本人土地를 新韓公社를 媒介로 하여 管理하고 있었던 것이나 當時 土地改革에 對한 要求, 그 가운데서도 全農의 土地改革의 要求狀況, 그리고 戰後 世界資本主義再編過程에서의 美國의 極東占領政策, 南韓의 政治·社會的 不安과 農民의 土地要求에 對한 副應의 側面에서 歸屬農地에 對한 分配를 一但 決定짓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45年 12月에 南韓全國農民總聯盟(全農)이 結成되고 그 結成大會에서 土地改革을 要求決定한 內容은 1946年 3月 5日에 北韓에서 發布施行한 北韓土地改革令과 거의 類似한 것이 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全農이 提案한 土地改革案의 骨格[10]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無償沒收 및 無償分配를 原則으로 한다.

② 沒收對象을 舊日本人所有地, 反民族的 親日分子의 一切의 地主的 土地所有로 한다.

(10) 谷浦孝雄, 앞의 책, 1966, p. 68.

③ 自耕하는 農民에 그의 耕作能力과 家族權에 基準을 두고 分配토록 한다.

④ 山林에 對하여서는 農民이 所有한 小山林을 除外하고서는 一切를 國有化하도록 한다.

⑤ 諸民主主義政黨 및 社會團體의 代表에 의해서 構成되어진 土地改革實施委員會가 美軍政과 協力하여 實施토록 한다.

全農의 土地改革案에 對하여 美軍政은 바로 1946年 2月에 舊日本人農地處分을 主軸으로 한 土地改革案을 마련한 바 있었는데 그 主된 內容[11]은 다음과 같다.

① 舊日本人所有土地以外는 有償買收 및 有償分配를 原則으로 한다.

② 不在地主의 所有土地 그리고 自耕하는 農家戶當 3町步를 超過하는 耕地, 學校, 病院, 教會, 寺刹, 其他 政府가 認定하는 厚生機關과 公共機關의 自耕能力을 超過하는 土地를 1948年 以前 5個年平均生產額의 300% 以內 價格으로 하고 15個年 年賦補償으로 政府가 이것을 買入토록 한다.

③ 買收한 農地는 小作農, 自作兼小作農 및 農業經營에 經驗을 갖는 雇傭農家, 海外로부터의 歸還農家에 戶當 3町步 以內에서 分配하고 分配農地의 地價는 1948年 以前 5個年平均生產額의 300%로 하며 15年間 現物로 政府에 年賦償還토록 한다.

④ 償還期間(15年)中에는 分配農地의 自由賣買, 贈與, 抵當 및 小作其他의 賃貸契約을 一切 禁止하며 絕緣, 轉業 및 離農하는 경우에는 政府의 許可를 받아서 이것을 處分토록 한다.

⑤ 不在地主로서 農業에 從事함을 希望하는 者에게는 3町步以內의 土地를 買上으로부터 除外토록 한다.

⑥ 農地改革의 擔當機關으로서는 中央에 中央土地改革行政處를 新設하며 道·郡·面에는 小作人과 地主 半半으로 土地改革委員을 構成토록 한다.

위와 같은 美軍政의 農地改革案은 當時의 立法議院側에 提出되었고 그에 對하여 4回에 걸친 修正을 加하여 겨우 立法議院의 本會議에 法案으로 上程處理될 段階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立法議院側에서는 農地改革과 같은 重要한 問題는 自國의 政府樹立以後에 實施되어야 한다는 理由로 法案上程에 反對한 意見이 많게 되었다.

이에 美軍政은 다시 農地賣買法과 같은 法案形式으로 立法議院에 提案하고 萬一 立法議院에서 南韓地主의 土地를 包含한 全體의 農地改革에 反對한다면 美軍政當局은 舊日本人所有地만이라도 別途로 分離하여 分配를 施行하겠다는 强硬한 立場에 놓이게 되었다.[12]

(11) 朝鮮銀行, 『朝鮮經濟年報』, 1948, p. 348.
(12) 櫻井浩, 앞의 책, pp. 56~57.

그러나 美軍政의 强硬한 態度에 對應하여 立法議院側은 舊日本人 所有地만을 分配한다 함은 農村經濟의 民主的 再建이란 改革趣旨와도 反對되는 內容의 것이어서 오히려 不公平한 結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實施의 技術上에도 困難한 問題가 되는 것이므로 美軍政案에 對한 飜覆을 要求케 되는 事態까지도 빚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立法議院側도 法案만은 美軍政案을 骨格으로 하여 作成함이 合理的이라 하여 이에 妥協折衷案으로 마련된 農地改革法案[13]이 1947年 12月 23日에 立法議院에 上程되기에 이르렀다.

① 中央土地改革行政處를 設置하여 同處가 農地의 取得·處分·農業關係資金의 融資, 土地改革委員會의 設置와 農地金庫의 管理 등을 行하도록 한다.

② 買收하는 土地는 耕作치 않는 者의 土地中 3町步를 超過하는 自作地로 한다.

③ 買上價格은 平均生產量의 3倍以內로 하며 地主에게는 石當表示의 證券을 交付하여 農產物公定價格의 1/15씩을 年賦償還토록 한다.

④ 分配順位는 當該農地의 小作農, 自小作農, 候補農家, 海外로부터 歸國하는 歸國農家로 한다.

⑤ 分配面積은 3町步以內로 하고 家族數, 年齡 및 勞動力 등의 點數에 依存 施行토록 한다.

⑥ 分配되어진 土地代金은 當該農地의 年平均生產量의 2割씩을 15年間에 걸쳐서 現物로 納入토록 한다.

이리하여 相互妥協案으로 마련된 農地改革案이 立法議院本會議에 上程되었으나 그 直後 同議院이 年末年始의 休會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處理되지 못하였다. 다시 1948年 1月 12日에 議院의 再開에 따라서 處理하려 하였으나 1948年 1~2月 當時의 在籍議員數, 出席議員數, 法案審議에 必要한 議員數, 法案可決에 必要한 議員數의 充足條件이 會議時마다 如意치 않아 農地改革法案의 審議가 全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農地改革法案은 審議되지 못하고 스스로 廢案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美軍政은 1948年 3月 23日 軍政法令 173號에 의하여 中央土地行政處의 設置令을 公布하여 新韓公社가 管理하고 있었던 歸屬農地만을 處分키로 決定하고 歸屬農地分配를 마침내 斷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當時 歸屬農地의 拂下方法[14]으로서는

① 中央土地行政處를 設置하여 그로 하여금 農地拂下에 關한 一切의 事務, 處分完了時까지의 農地管理, 適當한 形態의 農業資金의 融資, 農業經營의 指導監督 등을 行하도록 한다.

(13) 같은 책, p. 57.
(14) 谷浦孝雄, 앞의 책, p. 75.

② 希望하는 農民에 當該農地의 年生産量 300%를 地價로 하고 15年間 現物支拂方法으로 賣渡함. 그와 같은 경우에 農地購買者의 優先順位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한다.

(가) 當該農地의 現小作農

(나) 其外의 農事經驗者

(다) 其他(北韓 및 海外移住農民)

③ 土地代價償還中에는 一切의 土地處分을 禁止토록 한다.

④ 自耕農地와 小作地를 合하여 總耕作地가 2町步를 超過치 않도록 分配하되 農地所有의 上限은 2町步로 限定한다.

이와 같이 新韓公社의 所有地 혹은 管理地를 分配키 위한 政令으로서의 中央土地行政處設置令(15)의 公布에 따라서 新韓公社를 解體하고 南韓右翼勢力의 强力한 反撥을 물리치고 歸屬農地分配를 着手케 된 것은 當時 豫定하고 있었던 單獨選擧를 有利하게 하려는 計劃도 깊이 內在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즉 效果的인 公平한 歸屬農地分配는 어느 程度 農民들의 投票行爲에 있어서 共産主義의 拒絕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內容(16)에서 그것을 살펴 볼 수 있고, 아울러 過渡立法議院에서 廢棄案으로 되었던 農地改革法案과 比較하여 볼 때 日本人土地만을 對象으로 하고 있을 뿐 韓國人地主의 土地는 對象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點, 그리고 過渡立法議院에 提示된 當時의 最高 3町步의 分配에 대해 이 경우에는 最高 2町步로된 점등 本質的으로 다른 法이 되어 있었다는 點에 注目하게 된다.

또한 美軍政의 一方的인 歸屬農地의 處分에 對하여 農地改革은 農村經濟의 民主化와 韓國經濟의 再建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서 一般農地를 除外하고 歸屬農地만을 分配한다는 것은 農地改革의 基本目標에 어긋나는 不公平한 結果와 影響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을 中止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側面에서 猛烈한 反對마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美軍政은 이러한 反對를 默殺하고 一方的으로 歸屬農地分配를 推進하였다. 이와 같이 美軍政이 部分的인 것이기는 하지만 一方的인 農地分配를 實施하였다 함은 農民의 熾烈한 土地所有慾을 充足시켜 보다 過激한 革命思想의 壓力과 農民運動을 防止케 함과 동시에 資本主義的 私有原理에 立脚한 農地改革實施의 土臺를 構築케 하려는 意中이 强하게 作用(17)하였다는 事實도 注目의 對象이 된다 할 수 있다.

(15) 美軍政法令 第173號에 의하여 1948年 3月 22日 公布施行된 것으로서 中央土地行政處令은 土地를 所有치 않는 小作農民에게 前日本人所有農地를 拂下하여 小作農民으로 하여금 自立農地所有者가 될 수 있도록 助力하며, 土地所有權을 廣範圍하게 普及시켜 韓國의 農業을 發展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16) C. Clyde Mitchell, "Land Reform in South Korea," *Pacific Affairs*, Vol. XXII. No.2. June. 1949.

(17) 金用熙, 『1950年 農地改革の再檢討』, 1963, p. 140

〈表 6〉 新韓公社 管理農地의 分配面積과 戶數(1952年 2月 末日 現在)

畓	田	計	被分配戶數
189,518	56,036	245,554	727,632

資料：農林部, 『農林統計年報』, 1952.
農業銀行調査部, 『農業年鑑』, 1953.
註：田畓以外의 土地는 모두 除外.

〈表 7〉 歸屬農地分配의 地價償還現況(1957年 12月 末日 現在) 單位：버, 石

必要償還總量	償還量	償還率
8,582,772	7,595,817	88.5

資料：農林部, 『農林總計年報』, 1952.
農業銀行調査部, 『農業年鑑』, 1958.

위와 같은 農地改革案에 따른 內容, 趣旨 및 目的下에서 施行된 歸屬農地分配의 施行과 結果에 對한 內容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52年末 現在 新韓公社管理 一般農地 282,480町步 가운데 畓 189,518町步와 田 56,036町步 合計 245,554町步가 727,632戶農家에 分配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歸屬農地分配의 地價償還은 1957年 12月末 現在 88.5%의 償還率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된다(〈表 6〉와 〈表 7〉 參照).

歸屬農地分配에 對한 意義가운데 美軍政當局의 歸屬農地分配以前에는 小作農·自作農이 各各 70% 및 30%의 狀態에 있었지만 分配以後 그것은 各各 45%및 55%로 變貌케 되었다는 指摘[18]도 있고, 동시에 美軍政下의 歸屬農地分配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農地改革의 先驅가 되었다[19]는 側面에서 보고 있는 立場도 있다.

美軍政下의 歸屬農地分配의 評價 및 性格에 對하여 그것은 美國의 健全穩健한 民主主義의 樹立과 變革的 土地改革이라는 강력한 壓力에 대응한 確實한 防衛라는 第1次的 動機에서 規定[20]된다는 側面에서 본 見解도 있다.

한편 歸屬農地分配에 對한 評價 및 性格規定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內容[21]의 側面에서 그것을 具體化시키고 있는 立場도 있다. 즉

① 分配되어진 土地代價의 基準으로 되는 年平均生產量은 1942年 以前의 3個年平均으로 한 것이나, 1945年 8月 15日 以後는 水利施設의 破壞, 化學肥料의 不足, 農地改革의 遲延 등

(18) C.C. Mitchell, *op. cit.*, p. 144.
(19) 農地改革史編纂委員會, 『農地改革史』, 上卷, 1970, 農林部 農地局, p. 353.
(20) 川野重任, 『土地改革の社會經濟的意義』, 東京大學校 東洋文化研究所編, pp. 528~530.
(21) 印貞植, 『朝鮮農業經濟論』, 博文出版社, 1949, p. 86.

에 의한 農民의 生産意慾減退 등에 의하여 當時 基準 年生産量의 2割은 1948年의 生産量 3割 및 4割에 相應시켜 볼 때 높은 것이 되어 있었다.

② 農業生産의 豊凶에 關係없이 平年生産量의 2割이라는 土地代價는 從來의 5割이라는 小作料가 土地代價의 年賦라고 하는 새로운 裝置下에서 再現된 것으로서, 土地代價로서의 現物을 指定한 倉庫에 納入할 때까지 必要로 하는 檢査手數料, 包裝費, 運搬費 등등 一切의 費用을 農民負擔으로 하였던 것도 日帝下의 方法에서 踏襲한 것이다.

③ 小作料 5割 때에는 肥料代, 地稅, 水利費 등은 地主가 1/2 또는 全額 負擔하였던 것이나 分配後는 모두 農民의 負擔이 되고 있었다.

④ 小作料에 그 해의 作況에 따라서 減免의 慣行이 있었던 것이나 土地代價의 償還에는 減免이 없었고 다만 償還支拂을 延期함에 不過한 것이어서 韓國의 農業史上 類例없는 苛酷한 것이 되고 있었다.

⑤ 分配를 받은 後는 土地所有者가 되었다는 名目으로 戶稅, 所得稅를 비롯하여 雜多한 公課金, 寄附金이 從前보다 더욱 增加케 되었다.

⑥ 種苗代, 農具費, 役牛에 의한 耕起代, 揚水機使用料, 勞賃 등 一切의 生産費가 農民負擔으로 되었고 이에 더하여 年賦를 비롯하여 諸般費用과 負擔을 合計하면 적어도 年生産量의 7割에 達하는 것이 되어 있었다.

⑦ 農民의 手中에 2割程度의 生産物이 殘餘化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一家의 一年 最低限의 生活費에 比較하여 보아도 滿足되지 못한 것이었다. 先祖代代의 宿願이었던 土地所有者로 되면서부터 그들에 있어서는 過去의 小作農時代 보다도 一層 重壓的인 苦痛이 될 수 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게 되었다.

⑧ 土地分配를 받은 農民은 家畜 및 家財를 投賣하여 食糧을 購入하든가 高利貸로부터 高利의 生活費를 借用하는 두가지 길 밖에 없는 狀況에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農業生産의 基礎가 破壞되고 農業生産은 危機에 陷入되고 있었다.

또한 美軍政의 歸屬農地分配의 基本性格에 對하여 國內 共産主義, 急進的 民族主義勢力의 驅逐과 동시에 全面的 土地改革要求를 포함한 政治·社會的 激動에 對應하여 危機에 선 半封建的 地主制를 美軍政自身의 위로부터의 改革에 의해 妥協的으로 解消하려 한 것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半封建的 土地所有의 妥協的 解消의 한 形態로서 大韓民國 政府樹立後의 農地改革方向을 設定하는 것이 되었다[22]는 性格規定도 있다.

(22) Frank, Baldwin, *Without Parallel—The American-Korean Relationship since 1945*, Pantheon Books, New York, 1973, pp. 8~10.

美軍政下에서 施行된 歸屬農地分配는 當時의 農地分配原則決定에 있어서 混迷와 混迷를 거듭하고 있었던 3가지의 分配案[23] 즉 有償買收 및 有償分配案[24], 有償買收 및 無償分配案[25], 그리고 無償沒收 및 無償分配案[26] 가운데 有償買收 및 有償分配原則에 의한 農地改革案은 大韓民國 政府樹立以後에 施行된 農地改革施行의 前哨的 및 決定的인 條件으로 作用케 되었다는 점에서 그 基本性格을 살펴볼 수 있다는 見解도 있다.

IV. 結 論

첫째, 歸屬農地分配는 日帝植民地統治以來 分配當時까지의 支配的인 經濟範疇로서의 半封建的 土地所有의 徹底한 淸算과 農業生產力의 飛躍的 發展, 나아가서 自立的 國民經濟建設에 대한 당시의 支配的인 要求에 副應되어 施行된 性格의 것이 되고 있었다.

둘째, 美軍政下 歸屬農地分配는 南韓 全體耕地面積의 12.3%, 特히 畓面積의 16.7%에 該當되는 分配規模로서 이것은 곧 大韓民國政府樹立과 동시에 제일 먼저 農地改革을 斷行치 않을 수 없는 根源을 마련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農地改革의 先驅를 이룩케 하는 契機로서의 性格을 지니게 되었다.

세째, 美軍政下의 歸屬農地分配를 農民立場에서 性格지워 볼 때 新韓公社의 管理土地 가운데 山林과 果樹園 등 其他農地가 分配對象에서 除外케 됨으로써 部分的인 農地改革에 그치는 性格이 되었다.

네째, 歸屬農地의 分配方式이 抵當權設定契約을 통한 耕作農家의 自作農化 및 土地所有者化에 있었으므로 分配農地는 實際 中央土地行政處에 抵當設定을 條件으로 한 農地分配의 性格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

(23) Clyde Mitchell, "Land Reform in South Korea," *Pacific Affairs*, 1949, p. 144.

(24) 有償買收 有償分配案이란 耕者有其田을 原則으로 小作制度를 嚴禁한다. 土地私有를 認定하나 最大限度所有面積을 定하는 以外에 處分에는 一定制限을 課하고 土地兼倂에 의한 弊害를 防止하며, 買上對象은 舊日本人所有地를 無償으로 沒收하는 것이나 朝鮮人地主의 所有地는 國家가 買收하고 分配는 國家가 買上한 土地를 小作人에게 有償으로 分配한다. 그와 같은 경우 農民의 年間負擔은 生產費의 程度로 한다.

(25) 有償買收 無償分配案이란 耕者有其田을 原則으로 하나 韓國經濟의 現段階에 있어서는 土地는 國有로 하며 農民에게는 使用權만을 贈與토록 하며 買上對象은 有償買收, 有償分配案과 같이 하되 分配는 土地의 小作人에 對하여 無償으로 하고 農民으로부터는 年間生產量의 20%에 相當하는 現物稅를 徵收토록 한다.

(26) 無償沒收 無償分配案이란 小作制度를 撤廢하여 一切의 小作地를 農民에게 分與하나 農地의 處分權을 國家가 掌握하며 沒收對象은 舊日本人所有地, 反民族分子所有地 以外에 小作하고 있었던 地主所有地 및 5町步以上所有農家의 土地는 無償으로 沒收하고, 分配는 從來의 小作人 以外에 農業勞動者에게 無償으로 分配한다는 案이다.

다섯째, 歸屬農地分配는 分配받은 農家에 있어서 一切의 生産費를 農民自身이 負擔치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公課金 및 雜賦金增加 등이 發生되어 農民의 加重한 負擔을 强要케 하는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